

김해 동상동 베스티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안)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02.9.3)에 따라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10.16)** 현재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1·2순위 모두 인터넷청약이 가능합니다.(금융결제원 인터넷청약시스템(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 접속하시어 신청 가능)
- 본 아파트는 수도권외 비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지역으로 재당첨제한 및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단 1,2차 계약금을 모두 완납 처리되어야만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또한 전매는 매월 특정일을 1~2회 지정하여 전매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전매일은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시거나 추후 고지하도록 할 것임)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6)** 현재 김해시는 물론 이와 인접한 경상남도 전역,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김해시 주택건설지역 1년 이상 거주 신청자가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하며,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재당첨제한은 적용받지 않습니다.(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 다만,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 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 96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6) 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 정부에서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주)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는 안심하고 분양받으셔도 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거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31643(2015.10.1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대상 :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1100-1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11층 5개동 총 203세대 중 일반분양 7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당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공급대상

(단위: ㎡/세대수)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지분 (㎡)	공급세대수					해당동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면적(지하 주차장 면적포함)	합계		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 계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민영주택		59.9182 A	59.9182	21.2732	81.1914	36.7064	117.8978	41.0353	92	0	0	0	0	22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59.3658 B	59.3658	20.8438	80.2096	36.3680	116.5776	40.6570	80	2	2	2	1	26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59.9965 C	59.9965	20.8223	80.8188	36.7544	117.5732	41.0890	9	0	0	0	0	2	103동	
		70.1273 A	70.1273	23.8317	93.9590	42.9605	136.9195	48.0270	11	0	0	0	0	11	104동	
		70.2811 B	70.2811	23.8836	94.1647	43.0547	137.2194	48.1324	11	0	0	0	0	11	105동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금액: 천원)

주택형㎡ [전용면 적]	세대수	해당동	층구분	공급세대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 가치세	소계	1차(5%)	2차(5%)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계약후 1개월이내	2016.01.20	2016.03.21	2016.04.20	2016.06.20	2016.09.20	2016.12.20		입주지정일
59.9182 A	22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3 층	19	27,193	180,307	0	207,500	10,375	10,375	20,750	20,750	20,750	20,750	20,750	20,750	20,750	62,250
			4~11층	3	27,193	181,307	0	208,500	10,425	10,425	20,850	20,850	20,850	20,850	20,850	20,850	20,850	62,550
59.3658 B	26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3 층	13	26,942	178,058	0	205,000	10,250	10,250	20,500	20,500	20,500	20,500	20,500	20,500	20,500	61,500
			4~11층	20	26,942	178,958	0	205,900	10,295	10,295	20,590	20,590	20,590	20,590	20,590	20,590	20,590	61,770
59.9965 C	2	103동	1~3 층	2	27,229	179,271	0	206,500	10,325	10,325	20,650	20,650	20,650	20,650	20,650	20,650	20,650	61,950
			4~11층	0	27,229	180,271	0	207,500	10,375	10,375	20,750	20,750	20,750	20,750	20,750	20,750	20,750	62,250
70.1273 A	11	104동	1~3 층	3	31,826	208,274	0	240,100	12,005	12,005	24,010	24,010	24,010	24,010	24,010	24,010	24,010	72,030
			4~11층	8	31,826	209,474	0	241,300	12,065	12,065	24,130	24,130	24,130	24,130	24,130	24,130	24,130	72,390
70.2811 B	11	105동	1~3 층	3	31,896	208,704	0	240,600	12,030	12,030	24,060	24,060	24,060	24,060	24,060	24,060	24,060	72,180
			4~11층	8	31,896	209,904	0	241,800	12,090	12,090	24,180	24,180	24,180	24,180	24,180	24,180	24,180	72,540

※ 면적합산 시 소수점 4자리 이하에 대해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약식표기	59.9182	59.3658	59.9965	70.1273	70.2811
약식표기	59A	59B	59C	70A	70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및 홍보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층 : 4층 ~ 최상층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 85㎡초과하는 주택은 관련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 공용 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는 한 개의 공간을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세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또한,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가 불가능함.
- 본 주택에 대한 청약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됨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음.(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의거)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관련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안내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 시 연체료 부과됨)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일반(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중소기업근로자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구분	일시	장소
특별공급 신청	2015년 10월 21일 (수) (10:00~16:00)	당사 견본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2015년 10월 21일 (수) (17:00)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이 다소 지연 및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해당 청약신청 일시에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하여야 함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특별공급 공통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제2항 제1호(철거민), 제2호(국가유공자 등),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 제6항, 제7항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6)**을 기준으로 해당면적에 맞는 금액이 예치되어 있으면 청약가능(2015.06.08.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른 주택 청약종합저축 선납입정)

나.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의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였을 것.

다.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였을 것.

• 계약체결일 :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과 동일(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참조)

•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됨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저축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당첨 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 함

-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을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따른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청약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정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계약 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이자는 별도 지급 되지 않음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시 모두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할 수 없음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서류구비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청약접수 시 무주택서약서 작성으로 무주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며, 당첨자의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무주택 입증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참조)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할 수 있음. (세대주가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
무주택여부확인대상자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세대원(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6) 현재 김해시 및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자로 1회에 한하여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6)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13호),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

-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중 적격한 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모든 주택형을 청약할 수 있음.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 된 자 중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함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별표 1의2)

구 분	김해시 및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합니다.(동·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4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이 다소 지연 및 변경될 수 있음.
 - ※ 특별공급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일반 특별공급,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제19조 7항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9조 제13항에 해당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봄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주택형별공급세대수

(단위: 세대수)

구 분	59.9182㎡	59.3658㎡	59.9965㎡	70.1273㎡	70.2811㎡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0	2	0	0	0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0	2	0	0	0	2
신혼부부 특별공급	0	2	0	0	0	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0	1	0	0	0	1
합계	0	7	0	0	0	7

◎ 일반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의 10% 범위 이내)

• 신청자격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10.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1)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는 날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및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남북 피해자
-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6)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전 가족이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자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 7)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구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
- 8) 올림픽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국제대학스포츠연맹·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 9)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 나. 외국인 투자의 촉진
 - 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 10)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11) 해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중 귀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로서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2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대상세대 : 총 2세대(단위: 세대수)

구 분		59.9182㎡	59.3658㎡	59.9965㎡	70.1273㎡	70.2811㎡	계
일반 특별공급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0	2	0	0	0	2

•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수배정) 및 계약불가]

- 일반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주택건설량의 10% 범위 이내)**

• 신청자격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485(2009.12.4.)에 따라 기존의 '3자녀 이상 특별공급'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으로 개정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6)** 현재 주택건설지역(김해시) 또는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인 자로서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6)**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함

•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당첨자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함.(단, 배점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대상세대 : 총 2세대

(단위 : 세대수)

구 분	59.9182㎡	59.3658㎡	59.9965㎡	70.1273㎡	70.2811㎡	계
다자녀 특별공급	0	2	0	0	0	2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 하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6)** 이전부터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해시)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 배정 후 잔여물량 발생 시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지역 거주자 신청자 중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다자녀 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배점 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 (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6)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6)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6)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 기간 (4)	20	신청자 나이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5.10.16)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 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름(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신청자 나이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 (5)	20	10년 이상	20	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6)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임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	5	1년 미만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0년 이상	5	

(1),(2):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을 적용

(5):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될 경우 본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 전용면적 85㎡ 이하 10% 범위 이내)**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6)** 현재 주택건설지역 김해시 및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5)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를 김해시에 우선 공급하며, 미달 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당첨자 선정방법에 의하며, 경쟁이 있을 시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함

※ 2014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통계청 고시)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6)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 적용됨) 등으로 확인
-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입주자자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하여야 함.

구 분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고시)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734,603원 이하	5,224,645원 이하	5,560,026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681,524원 이하	6,269,574원 이하	6,672,031원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함.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하여야 함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19세 이상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20세 이상의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함)을 근무월수(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로 나눈 금액으로 함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본상 세대주(본인)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 (단, 가구당 월평균 소득 산정 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수를 포함)
- 신혼부부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 대상세대 : 총 2대

(단위: 세대수)

구 분	59.9182㎡	59.3658㎡	59.9965㎡	70.1273㎡	70.2811㎡	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0	2	0	0	0	2

• 당첨자 선정방법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 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6)**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자로 인정되나, 동일순위 안에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포함)하여 산정함

• 기타 유의사항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함
- 입주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공급계약)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분양권 전매 요청시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임신의 경우 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분양권 전매 요청시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전매 요청을 접수함]
-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하며, 양자 및 친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본인)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함 (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시 임신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수대로 산정)
- 가구당 소득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합산하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 19세 이상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소득도 합산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
-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함
-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함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 및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함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함
-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 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서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1회에 한하여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제1순위로 청약 불가함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 : 주택건설량의 3% 범위 이내)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6)** 현재 주택건설지역 김해시 및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6)**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세대주 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대상세대 : 총 1세대

(단위 : 세대수)

구분	59.9182㎡	59.3658㎡	59.9965㎡	70.1273㎡	70.2811㎡	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0	1	0	0	0	1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를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
(건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 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0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0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인감도장
	0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0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0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0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6)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
		0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6)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0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0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표1 소득증빙서류 참조]
	0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0	인감증명서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고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0	인감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0	위임장	청약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0	주민등록증	대리인	
	0	인장	대리인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6)**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선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2. 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1)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6) 현재 해당순위가 발생한 분 2) 2순위 : 주택청약 참가은행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이용방법 및 절차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청약 ⇒ 인터넷 청약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 ⇒ APT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6)** 현재 주택건설지역(김해시) 또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김해시 1년 이상(2014.10.16) 이전 거주자가 우선임.**
 - ※ 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어도 19세 이상인 자는 단독 세대주로 봄)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모집공고분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당첨자 발표일이 상이한 주택에 대하여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됨
- 주택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되어, 소정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1순위 청약을 제한받을 수 있음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면 적 구 분	청약관련예금 및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 주택	1순위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6)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자 · 청약신청시 모두 가정제로 청약 접수함.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약정납입에 월납입금 6회이상 납입 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6)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1순위자 중, 납입 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김해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2순위	전주택형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추첨제	

· 신청접수방법

1. 공통

- 총별, 동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건설지역(김해시) 및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청약순위 별로 청약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6)** 현재 주택건설지역(김해시) 거주 신청자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기타 경상남도에 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하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기타 경상남도 거주 신청분은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1순위

-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신 주택수의 40%를 가정제로, 60%를 추첨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전 세대 추첨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013.05.31.)

3.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4.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6)**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가정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정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 청약신청은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점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고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 가정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정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관련내용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 2007.9.1.일부터 시행된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1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정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정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정점수
 -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 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 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등 총점 84점
- 청약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입력은 청약자 본인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여 사전에 익히고 필요한 사항을 먼저 상담하시기 바람.
- 가정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인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이상~2년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이상~3년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총점	84	/				
비고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정제 청약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 가정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지역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 주택의 주택가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 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함)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p> <p>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p>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 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 주민 경우로서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p> <p>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p>

◎ 2순위 청약신청금 : 금융결제원(www.ap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 신청접수

주택형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전 주택형	일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청약자 : 주택청약 참가은행(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에 입출금 통장 개설후 2순위 청약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람.(인터넷 청약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2순위 청약 신청 및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2015.11.02]부터 평일(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구 분	환 불 장 소
인터넷 청약자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
창구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환불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받아야 함.

- 환불대상 : 2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 자동환불 미신청자 창구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 배우자 환불 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 시와 동일), 신청 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 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 시와 동일), 위임장
- 2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김해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2015.10.21	견본주택 방문접수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1100-2번지 캐슬프라자 2층 베스티움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015.10.22	인터넷 신청	- 국민은행 청약 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2you.com
	2순위		2015.10.23		- 출금계좌가 국민은행 가입자 : www.kbstar.com - 출금계좌가 국민은행을 제외한 전은행 가입자 : www.ap2you.com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장애인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에서 가능)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 시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 :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 비치)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 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가족관계증명서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본인확인증표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점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천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p>금융결제원에서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호 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정제적용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김해시 1년이상 거주자가 우선시 됨.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정당계약 종료전에 견본주택에 표시한 예비당첨자에 한정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p>※당사 견본주택에서는 예비당첨자에게 별도의 추첨참가 의사표시를 공지하지 않으므로 추첨참가를 희망하는 예비당첨자는 꼭 정당계약일 종료 전에 당사 견본 주택에 방문하여 참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문의.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 장소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노부모	2015.10.21 (수) 17:00	당사 견본주택 및 당사홈페이지	2015.11.03(화) ~ 2015.11.05(목) 3일간
일반공급	1순위	2015.10.29 (목)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2you.com)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상기장소 및 매체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서면 및 전화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 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계약체결장소에서 수납은행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당사 견본주택에서는 예비당첨자에게 별도의 추첨참가 의사표시를 공지하지 않으므로 추첨참가를 희망하는 예비당첨자는 꼭 정당계약일 종료 전에 당사 견본 주택에 방문하여 참가 의사를 표시하여

야 하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써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부동산→청약→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에 접속 → 당첨사실조회
	이용기간	2015년10월29일 ~ 2015년11월07일 (10일간)	
전화 / ARS	이용방법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서비스코드: 9→1→3]	금융결제원 전자금융 공동망(1369) [서비스코드:5#]
	이용기간	2015년10월29일 ~ 2015년11월07일 (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 등록하신분 중 당첨자	청약신청시 SMS 당첨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5년10월29일 (* 제공시간은 각 은행 및 금융결제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체결 절차

- 계약기간(정당 당첨자) : 2015년 11월 3일(화) ~2015년 11월 5일(목) [3일간] 10:00~16:00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시 당첨자 대상으로 별도 공지)
- 계약장소 : 당사 건본주택 [본 공고문 하단의 건본주택 주소 및 전화번호 참조]
- 계약금 납부 :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

■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0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0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0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 주민등록초본
	0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0	· 대리계약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인감도장(대리인),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특별 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0	·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인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신혼부부	0	· 혼인관계증명서
		0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0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0	· 임신증명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일반공급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 주민등록초본(직계존·비속인,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시) - 군 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1부
		0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인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계약조건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 취소 및 당첨내역은 삭제되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3개월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복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경남은행	207-0017-3469-08	코리아신탁(주)

■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도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 본인 부담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분양대금의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6항)

- 입주지정개시일 약 1개월 전에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토록 할 예정임.(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방문실시)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제46조에 따라 적용됨.

■ 입주예정일 : 2017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예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 품목(옵션)

(단위 : m²/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거전용면적)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정액제)	잔금 (입주시)	비고
59.9182	8,700,000	0	0	전 세대 무상 일괄 시공
59.3658	8,900,000	0	0	
59.9965	9,000,000	0	0	
70.1273	8,500,000	0	0	
70.2811	10,800,000	0	0	

◎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상기 표와 같이 주택 공급금액과 별도 책정되어있으나 전세대 무상으로 일괄 시공됨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이중단열창, 골조 및 마감, 가구 및 특정 인테리어, 안방불박이장 등)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하며, 주택형별 패키지로만 가능함)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동등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예:옆세대 비확장시 단열에 의해 내부벽이 단열두께만큼 돌출될 수 있음)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새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 (가전제품)

◎ 에어컨(저층 1층, 2층, 3층에 한함)

(금액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구분	설치 위치	제 조 사	금액
59.9182 A	49.5867 m ²	거실	LG	1,870,000
59.3658 B	49.5867 m ²	거실		1,870,000
59.9965 C	49.5867 m ²	거실		1,870,000
70.1273 A	49.5867 m ²	거실		1,870,000
70.2811 B	49.5867 m ²	거실		1,870,000

■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아파트 시공상의 하자외에 추가선택품목의 하자 및 A/S는 계약주체 및 제조사의 규정에 따름.
- **추가선택품목은 1층, 2층, 3층 저층 세대에 한해 무상제공하며, 그 외 고층 세대는 별도 추가 선택품목대상 및 무상제공대상 아님.**
- 추가선택품목 계약 후 계약시 안내받은 제품이 단종될 경우 동질, 동급이상의 제품이 제공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계약조건 및 사양은 계약 체결 후 통보할 예정임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신청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주방가구 및 신발장 설치 위치와 크기는 사업승인도면에 준함)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바닥재	[강마루] 거실, 침실, 주방, 복도 [타일, 석재] 현관, 디딤판 [타일] 발코니 및 실외기실 바닥, 발코니 바닥 배수커버	바닥난방(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 바닥방수, 발코니 바닥슬리브
벽, 천정	벽지 및 천정지, 벽 및 천장 도장, 장식벽(타일, 패브릭 시트), 주방벽 타일, 몰딩	벽 석고보드,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천정틀, 천정 석고보드, 커튼박스
조명기구	부착/매립형 조명 등기부, 욕실 등기부	배관 배선
욕실	타일(바닥, 벽), 천정재, 석재(석재 선반),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바닥배수 커버,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욕실장,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및 액세서리류 일체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 (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바닥배수슬리브, 배관배선)
주방가구	주방가구(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설비수전류, 주방액정TV, 가스쿡탑	설비배관(매립배관), 렌지후드, 소방검사 관련시설, 배관.배선, 주방배기덕트
가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 발코니 수전류	에어컨냉매배관(거실)
창호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디지털도아록	플라스틱창호내창(기본형), 현관방화문, 소방관련 방화문

※ 평형 및 타입별 품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59.9182㎡	59.3658㎡	59.9965㎡	70.1273㎡	70.2811㎡
옵션금액	-17,906,840	-17,690,300	-17,824,660	-20,722,750	-20,768,110

※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함.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기본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옵션은 선택이 불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하신 후 당사와 무관하게 계약자의 개별적인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시공 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함.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에 의거 최초 입주가날(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 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하여 향후 계약자가 시공할 경우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를 착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날(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동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건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음.
- 주방가구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단지 내부 여건 등 주요사항

◎ 일반공통

- 사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환경권 및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명칭 및 동 번호, 건물 외관 및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와 공급시(분양광고 등 포함)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축벽,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축벽 문양,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 상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재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2대로 아파트 주차장과는 별도로 사용.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전체 단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동별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동별 주차대수,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조강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발전(세부도서작업)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확정측량 후 대지면적, 연면적, 조경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사이버모델하우스를 참조하시기 바람.
- 주택형별로 확장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외부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질 또는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음.
- **주출입구, 경비실(주차관제시스템 등) 위치, 지하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위치는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
- 각 세대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동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출입구별로 상이함.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해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단지 홍보용 사인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시행인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사업시행인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내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사용할 수 있음.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및 대지의 관리는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자들이 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용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별도 대지경계선은 구획되지 않으며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상가 대지지분을 제외한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면적의 증감으로 인한 사업계획변경 승인 접수시 계약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주민공동시설로서의 운동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물로 사용될 수 없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의 옹벽과 사면처리는 외부여건에 따라 높이와 경사도가 변경 될 수 있음.
- 사용검사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검사 전·후 최종 사업시행인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 단지설계 및 기타 주요사항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및 층별, 향별, 동호수별 위치,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권,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외부 공간과 단지 인접 경계부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 부위는 법면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도시가스 인입 과정상 단지 내에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1동, 102동, 103동 저층세대는 주차장 진입램프, 경비실, 문주, 관리사무소 등의 시설로 인하여 조망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건물의 동출입구, 저층부, 옥탑, 지붕, 외부 싸인물 등의 형태, 색채, 재질 등은 설계 및 인허가과정 또는 기타 상황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에는 지상에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조명, 보안등, 소음, 진동 등의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내 6m도로는 비상차량(소방차량)용으로 입주자의 사용이 제한되며 이사 또는 기타 차량출입으로 인해 도로가 파손 될 경우 보수책임은 파손자에게 있음.**
-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되거나 재료가 변경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의 외부창호는 내풍압 구조경도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 창호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콘크리트 난간높이 및 난간대의 재질 및 색상은 층수 및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함(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음.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103동 지하1층에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101동 하부 앞부분에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전기실과 기계실, 펌프실, 저수조는 103동 지하 2층에 설치되어 미세한 소음 진동이 일부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단지내 도로 및 비상차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주변관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와 차량조명, 소음, 진동 등의 생활권 침해를 발생 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단지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 될 수 있음. 또한 단지내 조경수는 적절한 유지관리(물주기, 가지치기 등)가 되지 않을 경우 고사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대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산정 후 설치 예정임.
- 단지내 도로 및 인도폭 등은 사업추진 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철재류(난간, 놀이터 시설물 등)는 적절한 유지관리(방청도장 등)가 되지 않을 경우 녹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채광창, 자전거 보관대, 재활용품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대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상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별, 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음.
- 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실의 옥상이나 주변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및 통기관이 설치되며, 최상층 세대 및 층수차이로 인하여 옥상과 인접하는 세대의 경우 소음 및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음.
- 아파트 외벽 지층부 및 기단부는 지평면별로 시공되나 면적은 동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로 조건 및 필수 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 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환기불량 및 관리소홀에 의한 마감재 훼손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없음.
-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재료상의 특성에 의하여 균열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외벽의 콘크리트 이어치기 구간(층간조인트)은 공법의 특성상 균열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주차가 2대 있으며,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앞면에 계획 됨.
- 지하주차장 바닥면은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바탕면의 탈락 및 들뜸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폐쇄형 공간(파이프 샤프트, 엘리베이터 PIT 등)의 경우 기능상 큰 지장이 없는 사항(폼타이핀 미제거, 마감 미실시 등)은 하자가 아님.
- 대지면적은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주변에 위치한 상가, 공장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사생활권이 침해되거나 소음, 악취 및 분진이 발생 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랜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사양은 층별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의 창호는 관련법규에 의해 다수 고정창으로 설치되어 개폐가 불가함
- 세대내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가스배관이 건물 외벽을 따라 설치되어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단지 모형과 상이할 수 있음.
- 건축물에는 의장용 구조물, 야간 경관용 조명,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실외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또는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과 조명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설계변경 없이 경미한 사항으로 동 아파트의 외관사양 등이 동등 이상으로 상향 조절될 시 계약자 추가 부담 없이 시공함에 있어 별도 통보없이 시공할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통보 예정임.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 할 수 없음.
- 관련 법에 의하여 입주개시일(사용검사일) 이전에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함.
- 도로 영구 점용비는 영구적이므로 아파트 입주인이 부담.

※ 추가사항

- 각종 인쇄물(카다로그, 공급안내서 등), 컴퓨터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 등)과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내 전신모형(건축물, 조경식재, 시설물, 단위세대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사업승인 도서 및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음.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색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모델하우스)내에 시공된 제품은 본공사 시 자재의 품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급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건본주택(모델하우스)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사업승인 조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내에는 에어컨 실외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건본주택(모델하우스)보다 실외기실 잔여공간이 협소할 수 있음.
- 매립 냉매배관 2개소(안방-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는 시공되지 않음.
- 세대내 스프링클러 헤드 등의 위치 및 개소는 건본주택(모델하우스)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세대내 가스계량기 설치 위치는 건본주택(모델하우스)에 표시된 위치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화장실 상부에는 각종 오배수배관 및 급수급탕 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는 건본주택(모델하우스)에서 표현된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단자함, 세대 홈네트워크 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건본주택 (모델하우스)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표면마감이 천연석/천연가공석으로 시공되어있는 제품은 본 시공시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이색등 자연적인 패턴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부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의 색상, 패턴, 재질은 실제 시공시 건본주택(모델하우스)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의 사유로 타카자국이 보일 수 있음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배관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는 별도의 설치공간이 제공되며 창호를 통한 소음 및 열기가 유입될 수 있으며 창호의 위치는 본시공시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대피공간의 외부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 바닥 드레인이 없으며 출입문틀로 인하여 자연배수가 불가함
- 과대한 가전제품(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등)의 경우 세대내 설치위치에 맞지 않아 설치가 불가능 할 수 있음
- 건본주택에는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류는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예정임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우/오수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위치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음.
-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에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 설치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락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일반 콘크리트 뭇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도 등 견고한 고정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특히 벽걸이 TV설치 시 별도 보강이 필요함.)
- 인접 세대 또는 인접 침실 미확장시 단열재 추가설치로 인해 침실 및 거실 등의 일부 벽체가 돌출되고 거실 우물천정의 형태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주변에 위치한 도로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사생활권이 침해되거나 소음, 악취 및 분진이 발생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주택소유에 따른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인(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등기부등본: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 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수도권) 또는 8천만원(비수도권)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단, 2007. 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2]

- 사업주체는 제21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22조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2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같은 순위(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신청가능 주택규모를 선택한 이후 수시 변경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①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5.10.16)**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단, 공고일 이후 변경한 경우 변경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 ②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5.10.16)**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후 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6항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표시) 규정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고기밀 창호	적용	- 외기에 직접 면한 창 의 기밀성능 2등급 이상 제품 적용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 세대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고효율 조명기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적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 전동기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인증 제품적용 - 급수 펌프는 KS규격 기준효율 이상의 제품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정열스위치	적용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화장실 내 자동정열스위치 설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거실, 침실, 주방)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 월패드 및 스위치 통합형
일괄소동스위치	적용	- 세대 현관에 설치	절수설비	적용	- 세대내 수전류는 절수형 설비로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 소방, 통신감리
상 호	(주)창대종합건축사사무소	(주)나이스에너지엔지니어링
계약금액	510,000,000원 (VAT 별도)	23,000,000원 (VAT 별도)

■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2312015-101-0004900 호	₩ 11,949,630,000원 일금 일백일십구억사천구백육십삼만원 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분양보증약관 중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등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홍오도, 발코니샤시,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주) 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 : 동상동지역주택조합 (사업자 등록번호 : 666-82-64973)
- 시공사 : (주)동부토건 (사업자 등록번호 : 609-81-49721)
- 자금관리 : 코리아신탁(주) (사업자 등록번호 : 215-86-52007)
- 견본주택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1100-2번지 캐슬프라자 2층
- 분양문의 : ☎ 055)333-7157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